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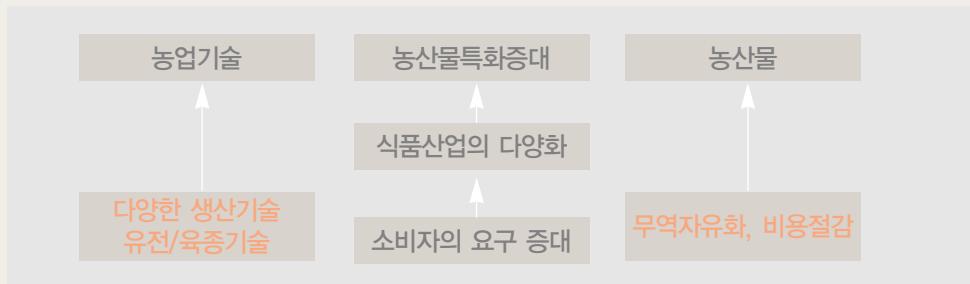
정자경·김희정
편집부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개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의 화학제·증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이다.

■ 국제 농산물 생산 경향

농업기술, 식품산업, 생산물에 대한 독점·과점의 3가지 요인은 농산물의 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소비자(특히 개발도상국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요구(안전성, 기능성, 친환경, 기타 사회적요인)는 경제적여유와 맞물려 증대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발전, 무역자유화 등에 따른 농산물의 독점·과점 경향은 농산물 특화 경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소품목 대규모 생산 농산물 시장에 다품목 소규모 생산 농산물이 개발·생산되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농산물 특화에 따라 농산물 시장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특화된 농산물은 I(기능성 농산물), II(GAP, 유기농산물)로 개략적인 구분이 가능하며, 향후 특화된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이런 특화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산물의 생산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상품 간 비교를 가능케 하고 상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생산농업인은 농산물판매를 통해 추가비용을 보충해야 하므로, 농산물 생산비와 소득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RaboBank : 네덜란드의 다국적 영농자금 융자 기업으로 농업 관련 연구, 컨설팅 등을 수행함.

■ GAP 도입의 필요성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농산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유통·가공→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식품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

Codex의 채소, 과일류의 안전생산 기준 내용을 수입요건화 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

• 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법체계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프라구축, 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수입농산물 기준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역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농촌환경개선 및 농가지원방안(직불제) 등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저투입 지속형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GAP 인증마크



GAP 인증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 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다.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

■ GAP 표시방법

그림 1의 표시사항을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크기는 가감할 수 있고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인증의 심별 로고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요구에 의하여 표기할 수 있다.

 우수농산물인증		*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품입니다.	
인증기관 : 인증번호 :			
구분		기재내용	
원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GMO여부	
중량, 개수		등급	
생산자(작목반영)		성명	
		주소 (전화)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시설명	
		주소 (전화)	
이력추적관리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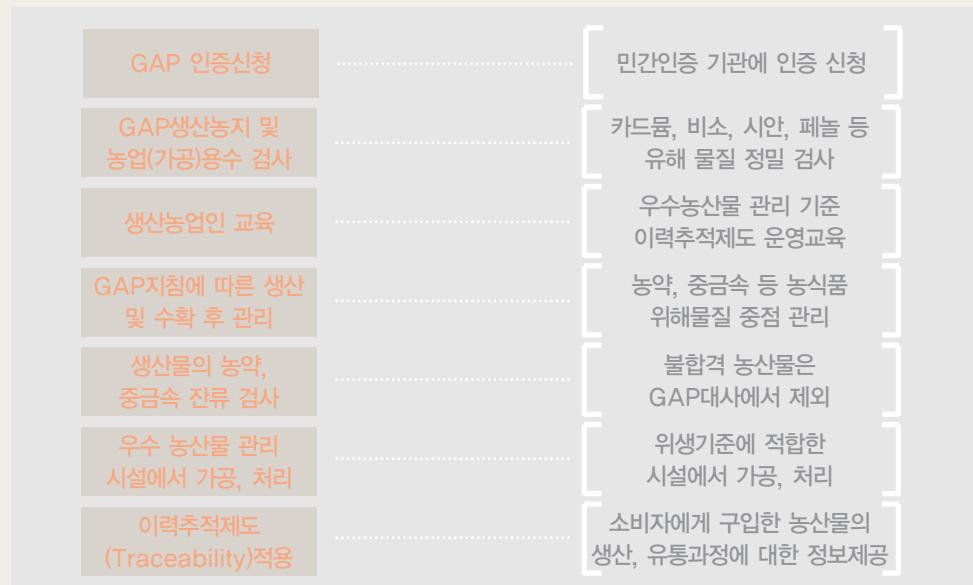
그림 1. GAP 표시사항

■ GAP 인증절차

GAP 희망 농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재배예정지 지적도 및 인증품 생산계획서, 이력 추적관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민간인증기관(국립농산물 관리원 지정)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우수농산물 세부심사절차와 방법(농관원 고시)에 따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42일 이내에 인증서를 교부한다.



■ GAP 인증을 받기위한 세부절차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GAP정보서비스, <http://www.gap.go.kr:8084/jsp/index.jsp>, 2009.2.13